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사유

『기부금품모집금지법』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조성 관련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기금조성에 관한 일부 조문정비 (제2조제2호)
“청소년육성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” 조항삭제
- 현운용실태와 부합되지 않는 기금관리 조문정비 (제4조제1항)
“세입세출외현금구좌로 관리하되” 조항삭제
- 기금예탁기관 관련 조문정비 (제4조제2항)
“은행법, 농업협동조합법,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 등“을 ”도금고“로 개정함

근거법령

-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제64조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동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세입세출외현금구좌로 관리하되”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기금은 도 금고에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.